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참 여 자 모 집 공 고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위기 대응과 인력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재직자 장기 근속률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 지원규모 : 680명
- 지원대상 : 본 사업 대상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지원 희망 기업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
지원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조건 확인
선정위원회 개최 후 선정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5. 8. 29.(금) 18:00
※ 지원 목표 미달성 시, 2차 모집 진행 가능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나.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 : 경남 내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체*
 - ①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당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② 자동차 관련 기업 증빙 가능 기업
 - ※ 완성차 협력사 증빙, 자동차 협/단체 회원 증빙, '24년 자동차 관련 매출 증빙(50% 이상) 등
 -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사업 신청 제한 (선정인원 무관)
 - ↳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사업 선정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수의 40%까지 사업 신청 가능
- 근로자 : 경남 내 자동차산업 관련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 중 근로자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64세 미만 근로자
 - ② 4대보험 가입자,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

다. 지원 제외 및 기타 요건

○ 사업장 제외 요건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확인 기업은 예외
- (신청일로부터 지원 종료 시) 기타 사유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근로자 제외 요건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자로 판단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시설관리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은 지원 가능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
- ※ 금년 고용노동부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지원금액의 최대 500%),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요건

- 동일 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하므로, 기업당 신청 가능 인원 및 근속 유지조건 충족 여부 등 판단 시 유의하여야 함
- 위·촉탁 인원의 경우 최초 채용 시점부터 근속의 중단 없이(고용보험 가입일 중단) 계약 조건만이 변동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

라.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8. 29.(금) 18:00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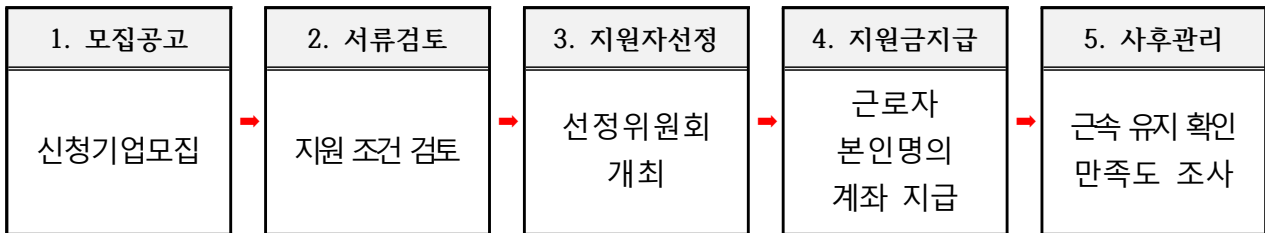
※ 지원 목표 미달성 시, 2차 모집 진행 가능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수행기관 대표 메일로 서류 제출(innobiz25@naver.com)

○ 문 의 처 :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055-281-2360/innobiz25@naver.com)

○ 신청 및 지원 절차



- 예산 소진 시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순번	구분	신청서류
1	사업주 신청 서류	[서식 1]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협약서
2		[서식 2]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신청서(사업주)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4		[서식 3-1] 사업주 확인서
5		[서식 4]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
7	근로자 제출 서류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8		[서식 5-1] 근로자 확인서
9	지원금 신청서	[서식 6]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붙임 서식의 사업별 신청서류 하단에 표기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사업 업무 운영 상황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선정 평가(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점											
근속경력	신청기업 근속연수	▪ 근로자가 인센티브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확인 <table><tr><td>3년 이상~ 5년 미만</td><td>5년 이상~ 7년 미만</td><td>7년 이상~ 10년 미만</td><td colspan="2">10년 이상</td></tr><tr><td>35점</td><td>30점</td><td>25점</td><td colspan="2">20점</td></tr></table>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5점	30점	25점	20점		35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5점	30점	25점	20점														
연봉수준	'24년 연간임금	▪ 저임금 근로자 우대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 지급받은 총액 기준 <table><tr><td>3000만원 이하</td><td>4400만원 이하</td><td>5,000만원이하</td><td colspan="2">이외</td></tr><tr><td>30점</td><td>25점</td><td>20점</td><td colspan="2">15점</td></tr></table> ※ 고용노동부 임금직업포털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임금 수준 조회 결과 하위(25%), 중위(50%), 평균값 참조				30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이외		30점	25점	20점	15점		30점	
30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이외														
30점	25점	20점	15점														
기업규모		▪ 영세 중소기업 선정 우대 <table><tr><td>50명 미만</td><td>100명 미만</td><td>200명 미만</td><td colspan="2">이외</td></tr><tr><td>25점</td><td>20점</td><td>15점</td><td colspan="2">10점</td></tr></table>				5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	이외		25점	20점	15점	10점		25점	
5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	이외														
25점	20점	15점	10점														
신규 입사 후 근속 유지		▪ 신규입사 후 근속 유지자 우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준 <table><tr><td>최초 직장</td><td>1회</td><td>2회</td><td colspan="2">3회 이상</td></tr><tr><td>10점</td><td>7점</td><td>5점</td><td colspan="2">3점</td></tr></table>				최초 직장	1회	2회	3회 이상		10점	7점	5점	3점		10점	
최초 직장	1회	2회	3회 이상														
10점	7점	5점	3점														

※ 증빙자료 미제출 및 누락 시 점수 미 반영

※ 동점자 발생 시 자연차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영세기업 근로자 순 우선 선발

※ 채점 기준은 기관 사정에 따라 지자체 논의 후 변동될 수 있음